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임 소영* · 조승연**



미국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한 사람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일반적인 현황 파악이나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농가 또는 가족농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활용



1

미국의 정책지원 대상으로서의 활동적 농업인

- 미국 농무부(USDA)가 제공하는 주요 농가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품목별 농가지원, 재해지원, 조경지원, 환경보전,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개인이나 법인체 등 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함.
- 설탕생산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은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하는 것을 수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반면, 재해지원, 조경지원, 환경보전,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AEF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실상 농업인 및 비농업인 농업경영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미국 2018년 농업법(farm bill)은 농가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AEF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8년 농업법에 제시되어 있는 개괄적인 AEF의 요건은 (1)농업활동을 위한 자본, 장비, 토지,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 제공에 상당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하며, (2)생산요소 제공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농업이윤이 귀속되고, (3)농업경영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2018년 미국 농업법 1308조 1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syl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ycho@krei.re.kr)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 표 1. USDA 제공 주요 농가지원 프로그램과 수혜 자격조건과 지급액, 2018년 농업법 |

프로그램	AEF	미국인	AGI ² 한도	환경보전준수규정 ³	지급액 한도
품목별 농가지원 프로그램					
· 가격손실보상 및 수입손실보상	X ¹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유통지원 융자혜택	X	—	\$900,000	X	· 한도없음
· 면화생산 비용보조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40,000
· 설탕생산지원 프로그램	—	—	—	—	· 한도없음
· 시장촉진프로그램: 옥수수, 수수, 대두, 육지 면화, 밀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시장촉진프로그램: 양돈, 낙농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시장촉진프로그램: 아몬드, 체리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재해지원 프로그램					
· 축산 사료 재해지원	—	X	—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축산, 양봉, 양식업 농가 긴급지원	—	X	—	X	· 한도없음
· 축산농가 보상	—	X	—	X	· 한도없음
· 산림농가 보상	—	X	\$900,000	X	· 한도없음
· 무보험 농작물 재해지원	—	X	—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무보험 농작물 재해지원(추가)	—	X	—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조경지원 프로그램					
· 긴급보전 프로그램	—	—	—	X	· 재해발생 당 \$500,000
· 긴급 산림복구 프로그램	—	—	\$900,000	X	· 재해발생 당 \$500,000
· 긴급 유역지원 프로그램	—	—	—	X	· 습지면적에 비례
환경보전 프로그램					
· 환경보전 지역지원 프로그램	—	—	—	X	· 회계연도 당 \$50,000
· 환경보전 의무 프로그램	—	—	—	X	· 회계연도 2019-2020년 동안 모든 경우에 대해 \$200,000
· 환경개선 장려 프로그램	—	—	\$900,000	X	· 회계연도 2019-2020년 동안 모든 경우에 대해 \$450,000
· 농업경영지원 프로그램	—	—	—	X	· 회계연도 당 \$50,000
· 농업환경보전지역권 프로그램	—	—	—	X	· 지역권 가치에 비례
· 환경보전지역협력 프로그램	—	—	—	X	· 한도없음
위험관리 프로그램					
· 낙농위험관리 프로그램	—	—	—	X	· 한도없음
· 농작물 보험료 지원	—	—	—	X	· 한도없음
· 농작물 보험금 지원	—	—	—	X	· 한도없음
기타					
· 무역분쟁으로 인한 농업인 손실 지원	X	X	X	—	· 36개월 동안 \$12,000

주 1) “X” 와 “—” 표시는 각각 해당 사항을 요건으로,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2) AGI란 농업경영체의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말함. AGI는 해당연도 이전 3개년의 평균값을 USDA에 보고해야 함.

3) 침식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보호하고, 습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함.

자료: U.S. Farm Program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Under the 2018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AEF)하는 개인이나 법인체는 기업(corporation),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협회(association), 제한적 동업체(limited partnership),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와 같은 조직체를 의미하는데, 농업법에선 이들을 (1)개인(Person), (2)공동경영(Joint operation), (3)기업(Corporation)으로 구분하여 AEF의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음.

| 표 2. 농업법 상 농업경영 주체별 적극적 참여(AEF) 요건 |

주체	요건
개인 (Pers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본, 장비, 농지, 적극적 노동¹⁾(active personal labor) 및 경영²⁾(active personal management)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2. 농업경영의 결과 발생하는 이윤 혹은 손실이 생산요소 제공에 상응하고, 3. 농업경영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할 것 <p>[예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AEF에 해당되면, 다른 한 사람도 AEF를 인정함. ② 농업 주경영자가 AEF에 해당되면, 직계존비속 또는 일가친척이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때 이들도 AEF에 해당함. ③ 농지제공 지주(landowner)는 요건 2와 3을 만족시키면 AEF에 해당함.
공동경영 (Joint oper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경영자가 개인(Persons)의 AEF에 해당되며, 2. 각 경영자의 적극적 노동 및 경영의 제공은 식별 및 증명 가능해야 하며, 3. 각 경영자의 적극적 노동 및 경영제공이 농업경영의 이윤에 상응해야 함. <p>[예외사항] ① 공동경영체 소유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임차없이) 각 경영자는 자동적으로 AEF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p>
기업 (Corpor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이 자본, 장비, 농지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2. 농업경영에 필요한 개별적 이해관계자의 노동, 경영의 제공이 식별 및 증명 가능하며, 3. 상(商)회원(corporate members)의 총체적 기여가 농업경영에 상응하며, 4. 개인(persons)의 2, 3번의 요건을 만족할 것. <p>[예외사항] ① 기업소유의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임차없이) AEF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p>

자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pp.7-8.

- AEF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

- ① [자격관련] 농업경영자 개인(외국인포함)의 경우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함. 농업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과 주소, 납세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고용식별번호(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필요함.
- ② [농업경영관련] 아래의 두 가지의 서류를 USDA에 제출해야 함. 매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농지취득이나 새로운 가족원 추가 등 농업경영에 큰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제출이 필요함.

1) 적극적 노동의 제공은 농지 준비, 경종, 추수, 농산물 판매와 같은 농업경영에 개인당 연간 1,0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간의 50% 이상의 투입을 의미함.
2) 적극적 경영은 자본재 구입 및 관리, 노동력 관리, 농산물 판매와 같은 농업경영에 농업이윤에 상응하는 정도로 참여함을 의미함.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 그림 1. 미국 농무부(USDA) 농업인 자격 정보제공 확인서 |

CCC-901 (02-10-16)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MEMBER'S INFORMATION Agricultural Act of 2014		1. County 2. State 3. Program Year	
<small>NOTE: The following statemen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 as amended). The authority for requesting the information identified on this form is 7 CFR Part 1400, th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 (15 U.S.C. 714 et seq.), and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Pub. L. 113-79). The information will be used to identify members of a legal entity. The information collected on this form may be disclosed to other Federal, State, Local government agencies, Tribal agencies,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that have been authorized access to the information by statute or regulation and/or as described in applicable Routine Uses Identified in the System of Records Notice for USDA/FSA-2, Farm Records File (Automated). Provid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voluntary. However, failure to furnish the requested information will result in a determination of Ineligibility for program benefits.</small>				
<small>This information collection is exempted from the Paperwork Reduction Act as specified in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Pub. L. 113-79, Title I, Subtitle F, Administration). The provisions of criminal and civil fraud, privacy, and other statutes may be applicabl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RETURN THIS COMPLETED FORM TO YOUR COUNTY FSA OFFICE.</small>				
PART A - For each individual or entity who is a member of this entity, list the member's name, social security/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address and percentage share of ownership. If a member has both types of identification numbers, list both.				
Name of Legal Entity		Complete Tax ID Number _____ - _____		
1. Member's Name	2. SSN or Tax ID Number (Last 4 digits if already on file)	3. Address	4. Percent Share	5. Does this member have signature authority for the legal entity? (Yes or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PART B - Embedded Entities: For any member listed in Part A, who is an entity, list such embedded entity's name and list the requested information for each member of such entity. If a member has both types of identification numbers, list both. If more than one member, listed in Part A is an entity,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for each entity on supplemental sheets.				
Name of Embedded Legal Entity		Complete Tax ID Number _____ - _____		
1. Member's Name	2. SSN or Tax ID Number (Last 4 digits if already on file)	3. Address	4. Percent Share	5. Does this member have signature authority for the legal entity? (Yes or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가족 중 한 사람이 AEF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에 참여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농 구성원도 AEF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³⁾
- AEF 요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자 및 경영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때로는 이러한 조항이 농가 지원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음. 일부 농업인들은 보조금 상한을 높이기 위하여 AEF 자격에서 거리가 먼 친척을 공동경영체 또는 법인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CBS뉴스 2019.07.03.).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 그림 2. 미국 농무부(USDA) 농업 경영활동 확인서 |

CCC-902E (12-22-08)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FARM OPERATING PLAN FOR AN ENTITY 2009 and Subsequent Program Years		1. County	3. Program Year	
			2. State		
For "actively engaged in farming" and other payment eligibility/limitation determinations. <i>This form is to be completed for an entity, including a joint operation, that is seeking benefits from the Farm Service Agency (FSA) under one or more programs that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at 7 CFR Part 1400. This form collects farming and other information about the entity that receives program benefits directly using the tax identification number listed in Part A. This form also collects information about the members of such entity. An individual who receives program benefits directly as an individual must complete a CCC-902I with respect to that individual's operation. Payment eligibility is based upon the contribution of certain inputs to a farming operation such as land, capital, equipment, labor, and management by the entity listed in Part A.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will be used by FSA to determine payment eligibility and limitation of payments by direct attribution.</i>					
PART A - ENTITY INFORMATION					
1. Entity's Name and Address (Include Zip Code)		2. Tax Identification Number (If th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 already on file with FSA, only the last 4 digits are required)			
3. Date of Formation (MM-DD-YYYY)					
PART B - TYPE OF OPERATION (Select only one)					
1. Select appropriate type of operation that defines the entity identified in Part A:					
<input type="checkbox"/> General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Limited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Estate <input type="checkbox"/> Joint Venture <input type="checkbox"/> Limited Liability Company <input type="checkbox"/> Charitable/Tax-exempt Organization <input type="checkbox"/> Indian Tribe <input type="checkbox"/> Revocable/Living Trust <input type="checkbox"/> Other: _____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input type="checkbox"/> Irrevocable Trust <input type="checkbox"/> Public School					
2. Supporting documentation (such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trust papers, partnership agreement, evidence of heirship, and operational authorities of all shareholders, members and owners) is required, except for public schools, States, State entities, cities, and counties, to verify the legal status of the entity and the authority of its shareholders, members or owners to the satisfaction of CCC.					
PART C - MEMBER INFORMATION					
1. Members - List all members/interest holders of the entity identified in Part A of this form:					
A. Name <small>(If member is a minor child, also complete item F)</small>	B. Tax ID Number <small>(If Taxpayer ID No., is already on file list last 4 digits)</small>	C. % Share	D. Position and Salary <small>(If applicable)</small>	E. Family Member Relationship	F. Enter Date of Birth for any member under 18 years old as of April 1
			◆		
			◆		
			◆		
			◆		
			◆		
			◆		
2. If the entity in Part A is an Estate or Trust, enter information on the Executor, Administrator or Grantor.		A. Name		B. Title	
3. Embedded Entities - A CCC-901, Member's Information, must also be completed and submitted concurrent with this CCC-902E if any member or interest holder of the entity identified in Part A is an entity.		<input type="checkbox"/> Check if CCC-901 is attached.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자격 관련해서는 농업경영자 개인(외국인포함)의 경우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며 농업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과 주소, 납세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고용식별번호(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필요함.
- 농업경영과 관련해서는 농업경영자와 경영 비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CCC-901(Member's Information)와 각 농업경영자의 자본, 농지, 장비, 적극적 노동 및 경영의 제공이 전체 농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한 CCC-902(Farm Operation Plan)를 USDA에 제출해야 함.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2 미국의 농가 정의

- 농가는 기본적으로 가족농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 1975년 이래 미국 농무부(USDA), 행정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통계국(US Census)의 협의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 이상일 경우 농가(farm)로 정의하기로 함.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 미만일 경우, 작물규모와 가축두수를 고려하여 점수(point)를 계산하는데 1점이 \$1에 해당함. 연간 농산물 판매액, 정부지원금(Government payment), 점수로 계산한 가상적 농산물 판매액의 총계가 \$1,000 이상이라면 이러한 경영체도 농가에 포함하며 점수농(point farm)이라고 분류함.
 - 점수농은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ERS),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Management Survey, ARMS), 농업통계국(Census of Agriculture) 등 통계생산을 위해 농가를 판별하기 위한 개념이며, 미국 농업법에서 인정하는 농가 지원프로그램의 자격인정 기준과는 무관함.
- 반면, 농가는 연방소득세 과세기준이기도 함. 미국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2032조에는 과세 목적으로 농가(farm)를 낙농, 축산, 과채, 경작, 대농장, 대목장 운영 및 경영 등의 활동을 통해 농업, 원예, 과수, 삼림상품 등을 생산하는 조직(structure)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미국연방규정집, 미국 농무부(USDA)보고서, 농업 관련 기관이 가족농의 정의와 요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함.
 - 이는 가족농의 개념 및 정의가 정책 대상을 구분하기보다는 농가경제실태의 파악을 위한 통계생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보여짐.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 표 3. 가족농에 대한 다양한 개념 및 정의 |

	요건
미연방규정집(Codes offederal regulations) 제761조 2항	(1) 농촌에 정주하는 정도가 아닌 충분한 양의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며, (2) 매일 이루어지는 농업관련 의사결정, 전략적 경영, 농장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노동력이 개인 혹은 혈연, 혼인관계,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농업경영에 책임을 지며, (3) 오직 가족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용노동력을 사용하며, (4) 농번기나 간헐적인 노동집약적 농작업 수행 시 임시노동력을 사용하는 농업 경영체
미농무부 식품농업연구소(USD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1) 소유권, 동업관계, 가족경영의 특성을 갖는 농장(비가족 경영체이거나 고용된 관리자를 두는 경우는 가족농이라 할 수 없음)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2019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1) 매일 이루어지는(day-to-day)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주경영자 (principal operator)와 주경영자와 관련된(related) 개인(individuals)이 농업 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Exploring alternative farm definition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49, 2009	(1) 농업경영자 또는 농업경영자의 혈연, 혼인, 입양관계인 사람이 50% 이상의 농업경영체(business)를 소유한다면 가족농이라 지정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Farm household well-being, glossary	(1) 농업경영자 혹은 농업경영자와 혈연, 혼인, 입양,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체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Hoppe(2014)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2014 Edition	(1) 경영주와 경영주의 친인척을 포함하는 경영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자료: 저자 정리

- 가족농의 정의 및 요건은 다양하지만 가족 중심의 농업경영체 소유와 경영이 제시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는 Hoppe(2014)의 가족농 구분 기준을 토대로 가족농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가족농을 엄격히 정의하기보다는 CFGI를 기준으로 가족농을 구분하고 비가족농을 판별하여 다양한 미국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
- Hoppe(2014)는 2011년 기준 미국에서 가족농이 모든 농업경영체의 97%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농업경영체의 단위를 판단하는 기본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가족농을 경영주의 직업상태와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함.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 표 4. 경영주의 주직업과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따른 가족농 분류 |

구분	유형	경영주의 주직업 ¹	총현금농업소득(GCFI) ²
가족농	소규모 가족농		\$350,000미만
	- 은퇴가족농	은퇴	\$350,000미만
	- 농장외(off-farm) 직업 가족농 ³	비농업(non-farm)	\$350,000미만
	- 직업가족농		
	· 판매규모 작음	농업	\$150,000미만
	· 판매규모 보통	농업	\$150,000~\$349,000
	중간규모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350,000~\$999,999
	대규모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1,000,000 이상
	- 대형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1,000,000~\$4,999,999
	- 초대형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5,000,000 이상
비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미해당

주 1) 경영주가 50% 이상의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직업

2) 총현금농업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 농산물, 축산물 판매소득, 정부보조금, 기타 농업관련소득 등을 포함

3) 경영주가 농업근로자인 경우도 포함

자료: Hoppe(2014).

- <표 4>에 제시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농가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가족농이 미국 농가 중 약 97%를 차지하며, 나머지 3%의 비가족농이 전체 생산액의 약 15%를 차지함.
 - 연간 총 농업소득(GCFI) \$350,000 미만의 소규모 가족농이 미국 농가 중 약 90%를 차지하나 이들이 생산액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 정도임.
- 반면, 전체 농가 중 8%에 해당하는 중간규모 및 대규모 가족농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 중 약 60%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화됨.
- 전체 농가 중 약 50%가 은퇴농 또는 농장 외 직업 가족농이지만 이들 농가의 생산액은 전체 농가 생산액의 7% 정도에 불과함.
- 가족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생산액에 비례하나, 비가족농의 평균 경지면적이 1,540에이커에 이를 정도로 규모화됨.
- 은퇴가족농, 농장 외 직업 가족농, 판매규모가 작은 소규모 가족농은 자기소유농지의 이용비율이 크지만 (적어도 65% 이상), 중간규모 및 대규모 가족농과 비가족농은 부분 소유 또는 임차농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큼.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 표 5. 미국 농가 유형별 분류, 2011년 |

구분	소규모 가족농				중간 규모 가족농	대규모 가족농		비 가족농	전체
	은퇴 가족농	농장 외 직업 가족농	판매 규모 작은 농가	판매 규모 중간 농가		대규모 농가	초대형 규모 농가		
전체호수	353,922	909,872	567,214	118,253	123,009	38,541	3,857	58,175	2,172,843
농가 수 비중	16.3	41.9	26.1	5.4	5.7	1.8	0.2	2.7	100.0
생산액 비중	1.5	5.1	6.8	12.0	24.8	23.7	11.3	14.7	100.0
C G F I (\$) 1	1천 미만	29.0	30.5	15.7				17.9	22.0
	1천~1만 미만	43.2	40.3	30.0				18.6	32.2
	1만~10만 미만	24.6	25.5	44.9				28.6	27.2
	10만~15만 미만	1.5	1.6	9.4				7.1	3.6
	15만~35만 미만	1.8	2.1		100.0			5.8	6.8
	35만~50만 미만					42.8		5.0	2.6
	50만~100만 미만					57.2		6.2	3.4
	100만~500만 미만					100.0		8.1	2.0
	500만~1,000만 미만						66.6	1.3	0.2
	1,000만 이상						33.4	1.5	0.1
경지면적 (중간값, 에이커)	68.0	50.0	92.0	427.0	898.0	2,035.0	2,480.0	143.0	83.0
경지면적 (평균, 에이커)	166.0	145.0	279.0	1,022.0	1,587.0	3,309.0	4,927.0	1,547.0	415.0
평균노동투입 (1단위=2,000시간)	0.7	0.7	1.2	2.6	3.5	8,006.0	38.6	4.9	1.4
비중(%)	경영주	57.2	61.1	65.2	55.3	40.7	18.1	3.7	14.2
	배우자	16.4	20.8	16.5	14.3	9.6	4.0	1.0	2.2
	고용노동자	16.0	7.8	8.6	14.9	33.9	57.6	74.4	52.1
	계약노동자	1.6	1.5	1.8	3.4	4.3	10.6	18.1	22.7
농지소유형태									
비중(%)	완전자기소유	87.0	73.5	64.9	31.6	15.6	13.0	23.4	59.2
	부분 소유	11.6	22.2	29.0	54.7	72.7	70.6	56.5	26.7
	임차	1.4	4.3	6.1	13.7	11.7	16.3	20.2	14.1

주: 총현금농업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은 농산물 및 축산물 판매소득, 정부보조금, 기타 농업관련소득 등을 포함

자료: Hoppe(2014).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가, 가족농의 정의

참고문헌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U.S. Farm Program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under the 2018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 USDA. CCC-901 Form: Member's Information—Agricultural Act of 2014. Commodity Credit Information,
- USDA. CCC-902 Form: Farm Operating Plan for an Entity: 2009 and Subsequent Program Years. Commodity Credit Information,
- USDA. Codes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7.
- Hoppe, R.A. 2014.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2014 Edition",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132*,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Hoppe, R.A. and Bunker, D.E.. 2010.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2010 Edition",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66*, U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 Research Service.